

[별지 제1호 서식] (제14조 관련)

노원구서비스공단 인권경영 헌장

노원구서비스공단은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.

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 관련 원칙과 정책은 임직원, 고객, 협력업체, 지역사회 등 공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.

공단은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한다.

- ◆ 하나.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.
- ◆ 하나.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,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.
- ◆ 하나.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, 연령, 인종, 장애, 종교,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.
- ◆ 하나.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
- ◆ 하나. 우리는 아동노동,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, 안전,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(ILO)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.
- ◆ 하나. 우리는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투자기업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,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◆ 하나.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.
- ◆ 하나. 우리는 고객의 이동권과 안전권,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.
- ◆ 하나.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.
- ◆ 하나.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.